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1. 11 선고 2020나815 판결 [표시변경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1. 11 선고 2020나815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4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종교단체

피고, 피항소인 1. B종교단체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변론 종결 2020. 9. 23.

판결 선고 2020. 11. 11.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4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4. 26. 접수 제23779호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 및 별지는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자 소유자인 'A'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A(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종전 명의인이자 소유자인 'A'를 뜻한다)의 정관은 이사, 감사 등 임원만을 사원으로 정하고 있고 일반 신도는 A의 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이 아니라 이사, 감사 등 임원만으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가 바로 A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표시를 변경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을 취득할 당시(제1 토지는 1986. 10. 10., 제1 건물은 1988. 6. 7.에 각 취득하였다)와 가장 가까운 1990. 1. 21. 개정된 A의 정관(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에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3장 '이사회' 등 임원과 그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반 사원의 범위 또는 자격에 관한 내용은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다가 갑 제5, 6, 22 내지 26, 29 내지 31,

47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이 최초로 취득한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은 원주 시내 불교신도들로 구성된 단체인 'M'의 구성원인 F, G 등이 출연한 돈, M와 피고 C의 모금활동을 통하여 마련한 돈, 일반 신자들이 출연한 돈 및 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었고, M 구성원 및 기타 신도들이 위와 같이 돈을 출연하면서 제1 토지 및 제1 건물 등의 소유권을 스님들과 신도들 전부를 사원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찰이 아니라 이사, 감사 등 임원만을 사원으로 하고 신도는 사원이 아닌 별도의 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A의 성립 이후에도 M와 A은 모두 같은 주소(원주시 D)에서 활동하여 왔고, M의 창립 15주년 및 18주년 기념법회 안내서(갑 제29, 30호증)에 M의 연혁 중 하나로 A을 창립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A이 발송한 초청장(갑 제31호증의 1 내지 3)의 발송명의인 또한 'A원장'인 피고 C과 M회장인 G 또는 P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A의 정관은 1986. 8. 12. 제정될 당시부터 M회장이 A의 이사장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온 점, ③ 반면에 J 등 원고의 구성원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이 본격화된 2013년경 이전까지는 이사, 감사 등 임원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로서의 'A', 즉 원고가 M나 피고 C 등과 별도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2018. 10. 30.경 Q 총무원장에게 발송한 'A 원상회복 촉구' 문서(갑 제47호증)에는 "A은...1982년 2월 조직되어, 모든 종단 소속의 불자들이 불교회관을 건립하여 불교의 근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실천하는 성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모금활동을 통하여 강원도 원주시 D에 1987년 1월에 현 A으로 건립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A이 M(1982. 2. 조직되었다)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M의 회칙(갑 제5호증) 제5조는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전개 대상 사업으로 '불교발전의 구심점을 이룰 불교회관의 건립'을 명시하였고, A의 정관(1990. 1. 21. 개정된 것 기준) 제5조 또한 '사업'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본원은 M와 R 스님(피고 C)이 주축이 되어 건립된 불교회관으로서 이 지역 불교발전의 구심점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확장을 위한 사업"이라는 규정을 둔 점, ⑥ A 정관의 '임원'이라는 문구는 임원이 아닌 일반회원(신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등기명의인이자

소유자인 A은 1982. 2. 조직된 신도단체인 M의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출연·모금한 돈을 기초로 제1토지, 제1 건물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성립된 사찰로서 스님들과 신도들(그 중 상당수는 A 성립 이후에도 M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을 사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A의 성질에 관하여 비법인재단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스님들 또는 신도들로부터 독립한 재산단체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M의 구성원을 비롯하여 스님들과 신도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온 비법인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스님과 신도들을 사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사찰이 아니라 이사, 감사 등 임원만을 사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이 A을 Q에 가입시킨 과정에 흠결이 있는 것이 이 사건에서 청구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C이 사원총회 등 비법인사단인 사찰이 종단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A을 Q에 가입시킨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등기는 실체와 달라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C은 A의 사원 자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A을 Q에 가입시킨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등기명의인이자 소유자인 A과 동일성이 없는 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A의 구성원으로서 총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데에 A 전체 사원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재우

판사진영현

판사양승우

별지